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총괄사무실 겸 화상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박근혜 정부 1년, 국회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은 정쟁(정당국가화 심화)으로 변질됨
그럼에도, 정부(모든 국가기관)를 견제하는 국민대표기능 강화에는 기여함

--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감성적은 C학점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국방 치안 민생 등)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기속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하라(국회법 114조의 2))

《국정감사 한 눈에 보기》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15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인천(해상국감) 등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은 제19대 국회 2년차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하여 11월 1일(금)까지의 국감에 대해 총평(간이)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평가 및 국감우수의원 평가 등은 12월 초 정밀 종합평가후에 발표할 예정임.]

- 1. 국정감사 예찬 :**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제43조)에 의해 도입된 세계유일의 제도로 10월 유신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상징적인 의회의 권한으로 부활하여 이제 25년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국정감사는 선진국과 같은 국회예산편성권, 상시적인 의회조사제도가 없는 가냘픈 민주제도상황 속에서 더욱 행정국가화(또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의해 비대해진 국가(행정)권력에 맞서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 2. 무용론의 저의 :** 일부에서는 국감을 꺼리는 부패·비리은폐세력이나, 그 사주를 받은 이들에 의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선진민주제도 도입시까지 그 보완적 기능은 매우 중차대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3. 정부 통제수단 :** 국정감사는 헌법 제46조 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라 여·야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 5부의 국정전반을 감사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전력란을 초래하여 국민을 불편케 한 원전비리와 저축은행, 동양그룹사건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이다.
- 4. 국감책무 방기 :**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법의 개정으로 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2년째 미루고 있고, 민주당은 다수결 원칙 위반 등 위험적 요소가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소수당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정당인양,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으로 사실상 국감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국정감사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민생 정책국감보다 정쟁에 빠진듯하여 매우 안타깝다.
- 5. 기업국감 우려 :** 게다가 역대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62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마구잡이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는 비난과, 200명 기업증인을 채택하여 본래적인 국감이 아닌, 포퓰리즘적인 보여주기식 '기업국감'으로 전략케 한 것(파행까지 초래)은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순서	1. 총평 (19-2 국감, 간이총평) / 2 2. 효율성제고를 위한 국감개선제안 / 5 3. 특정이슈에 함몰된 과제들/ 10	4.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감진행상 특징 / 20 5. 여전한 국정감사장 풍경 / 24 6. 국감위원 흠피 활용과 지방국감 현황 / 27
----	--	--

I. 총평 (19-2 국감, 간이총평)

-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15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보에의 권리·알권리(전문, 제1조, 제10조, 제21조)와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법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3~5명씩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NATV)와 인터넷의사중계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297명(국회의장, 의원직 상실의원 2명 제외, 수감중인 정두언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포함)의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였음.
-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 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백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과 사회통합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되어 부패척결 국가개혁 등의 대안부재 등은 부족했음.
-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는 교과서 논란, 국정원 댓글 수사,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 관련, 동양그룹사태, 기초연금 관련 이슈에 집중되었으며, 교문위의 교과서 파행, 기재위의 증인논란 국감파행 및 연기실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쌀 목표가격 인상관련 야당 의원의 국감중단선언 등과 여야간의 증인채택공방 등에 의한 파행 및 정무위, 기재위, 산업통상자원위, 환노위 등의 기업증인 채택논란, 법사위의 여주지청장 항명파동, 소위 ‘김문수 국감’ ‘박원순 국감’ ‘홍준표 국감’ 등의 자자체 국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의 선서거부, 국가보훈처장의 국감자료 제출거부, 동양그룹사태관련 청와대 회의 여부 등 논란이 많이 빚어져 국감의 본래적인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평가하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새누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별 상시국감**으로 국민 권익을 지켜내는 정책, 만생국정감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함.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정감사 잣은 불출석,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국감 불출석 증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활동으로 의회민주주의의 활성화시킨 것은 다행이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도 국회 내에서의 민생 의정활동을 기대함.
- **제19대 국회 두번째 국감의 긍정적인 점**을 찾으면, [1]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 이어 제17대, 제18대 국회 국정감사보다는 극단적인 정쟁과 파행국감이 많이 사라졌으며, 법제사법위가 11. 1. 국감 부활이후에 처음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 기초연금 및 국가재정건성 확보(특히 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했고, [3] 동양그룹사태 등에 대한 금융감독의 해태 등에 대한 적절한 조명이 있었고, 부산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 장애인학교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질타, [4]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는(증인위주 국감 제외) 정책국감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5] 당직자의 국감참여률이 높아졌으며, 지난해의 시정 조치를 짚는 의원들이 많이 생겨 앞으로 반복질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편파적으로 자기소속당의 이익만을 위해 감사진행을 하는 위원장이 사라진 점.
- **반면 실망스러운 점은** 먼저 [1] 정기국회 전 상임위별 실시기로 한 국감 등 개정된 국정감사법이 지난해 이어 실시되지 못하고, 30일 국감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20일 국감으로 운영되었고, [2] 국정감사 이슈가 국정원 댓글 등 국가기관의 지난 선거개입 문제, NLL 대화록, 4대강 등 집중되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였고, [3] 증인채택 논란으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또한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피감기관의 태도 때문에 국감파행 및 국감 중단 사태가 빚어졌으며, [4] 감사위원의 자리 비우기(중복질의 등의 많은 폐해가 있음)가 다시 늘어났고(특히 새누리당이 심했음), 파행을 하다가 자정을 넘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충실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5] 지난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국정감사 직전까지 민주당의 장외 투쟁으로 인한 감사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이슈의 개발도 부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차고 충

실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대정부질문, 예산심사, 입법심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4일 중간평가 성적 그대로 "C 학점" 국정감사로 평가함.

이번 국감(19-2)의 긍정점 · 실망점 요약(중간평가 보완)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10. 30 재·보궐선거가 있으나,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도 및 성실도 증가(여야 중진의원들도 국감장 참여)	1. 제19대 국회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시작부터 법위반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원별 실시기로 한 국감법 위반)
2. 기초연금논란 등 복지정책과 조세 재정 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	2. 역대 최대 피감기관, 역대최대 기업증인신청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증인모욕주기, 발언권도 없는 국감) * 기업인 파다 증인신청은 개선되어야
3. 동양그룹사태 등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	3. 교문위의 증인채택 관련 파행 및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국감증인(TV조선)불출석에 의한 파행, 증인채택논란과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논란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김용환 증인의 합법적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인신공격 · 비난과 공박은 위헌적 기본권 침해 아닌가?
4. 음박지르기, 고성은 있으나,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많이 줄었으며,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4.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미흡으로, 매년 반복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NLL대화록 및 국정원 댓글 이슈가 민생정책이슈보다 많이 보도됨.
5. 소수이지만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있는 정책국감 의지 및 정책대안 제시 탁월 (제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5. 시찰은 국감전후에 하라고 15년동안 끊임없이 요구해도 국방위는 시찰,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로 여전히 전시성 예산·시간 낭비·비효율 감사 계속, 개성공단 시찰로 여론 관심 주목되었으나 효과에는 회의.

II.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1.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자.

(1) 제안의 이유

- 1) 정기국회를 입법국회, 예·결산 국회를 만들기 위하고,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이 입법기능과 예·결산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 2) 국정감사의 정기성(여야 합의없이 자동적으로 실시)을 되도록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1회성 국정감사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3) 그간의 국회법 등 제도개혁의 취지를 살림

4)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내용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등등

(2) 제안의 근거

1) 국회법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전문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30]]

(3) 제안내용

1) 임시국회의 기본 일정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상임위활동, 입법을 위한 본회의 개최로 한다.

2)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한다.

3) 2월 임시회와 6월 임시회에 국정감사를 하여,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2월 임시회와 6월 임시회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휴회 중에 2주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① 국감조법 제7조 1호 기관은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7조 제2호 기관, 제3호 기관은 선택하여 1회로 이내로 제한하되, 문제가 있는 기관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1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제4호 기관은 2월의 경우에는 정기회에서, 6월의 경우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다.

(4) 기대효과

1)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 내용을 반영하면서,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를 살릴 수 있음.

2) 연간 임시회 자동개회 가능횟수가 3회이니, 정기회 전에 하려면 1회 임시국회를 더 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음.

3) 매년 임시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하려면 피감기관의 국감 준비가 많아질 수 있음도 고려.

2. 증인신청 기준과 신문방식에 대해 형사소송규칙 수준의 규칙을 마련하자.

(1)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증인들에 대한 대거 출석요구와 출석한 증인에 대한 부실한 증인신문이 논란이 되었는데, 기관증인이 아닌 기업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증인신청의 사유와 목적, 증인신문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증인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 2012년도 국정감사와 같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감기관의 과다에 이어 증인과다로 인해 국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국감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를 하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증인신청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여, 증인과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과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3) 신문의 방식을 정해 놓아 인격 모독이 되지 않도록 하자.

형사소송규칙 제74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4) 참고 (현행 증인 신청 관련 법률)

1)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③ 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 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후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질의를 막으려면,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 절실

①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② 감사위원별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1)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¹⁾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위원회별 반복된 시정처리요구건수》 (2008년~ 2012년)

위원회	반복된 시정처리요구건수	위원회	반복된 처리요구건수
국회운영위원회	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37
법제사법위원회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5
정무위원회	55	지식경제위원회	47
기획재정위원회	20	보건복지위원회	111
외교통일통상위원회	54	환경노동위원회	37
국방위원회	15	국토해양위원회	53
행정안전위원회	39	여성가족위원회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	계	561건

주의 : 제18대 국회에서 여러 번 시정처리가 요구된 사항이라도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감에서 시정처리요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2)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으나, 해당기관이 국회의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시정처리가 요구되어 지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임. (구체적인 중복사항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올려 놓았음)

4.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 홍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

-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회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봄.

지난해에 36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10시간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예산낭비나 부정부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외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옴.

이번 국정감사에서조차 정병국 의원이 지적한 재외공관 직원의 아내 사업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을 뿐 특별히 감사다운 감사내용이 없었음.

5.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에 하라.

역대 국정감사의 폐해 중 하나가 ‘사진찍기용’ 시찰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성을 부각하는 점에서 좋지만, 사전에 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하여 태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더욱 줄이는 문제점이 발생함.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봄.

6. 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영상녹화 공개하라.

국회가 아닌 외부(피감기관 공관 등)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Ⅲ. 정당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특정이슈에 함몰된 과제들 -- 필히 점검, 해결

10월 14일 국정감사 시작 시에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과 민주당 정호준 대변인이 약속한 것처럼 민생 살리기, 약속살리기, 민주주의 실현(민주당), 실천가능한 대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새누리당) 의정활동을 위해 이후에라도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1) 군전투력 증강 및 물샐틈없는 안보태세 확립

- 차기 전투기, FX 선정 사업 등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데 대한 전력 공백 문제(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17)
- 서북도서 등 서해 지역에서의 경계태세 등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3)
 - 해군의 최신함정과 잠수함 등이 잦은 고장과 정비 불량으로 전투력 손실
- 여군 대위 자살 사건 등 군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육군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 육군본부의 실효적인 자살방지대책(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 2013. 10. 24)
- 육군 주력 공격헬기인 코브라(AH-1S)가 수리부속 부족으로 제대로 훈련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 2013. 10. 24)

(2)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 내년도 경제성장을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대출 한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3. 10. 18)
-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소득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 현오석 총리는 부처 간 금융정보 공유를 확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

겠다고 밝혔고, 부자 감세 철회와 관련한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 10. 17.)

- 기업 현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안좋은데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하는 등 현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대기업,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부자감세 철폐 주장(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31)
- 세법 개정안과 예산,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문제(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31)
-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조3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조사나 단속위주의 세무조사 강화계획에 불과(관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 2013. 10. 28)
 - 과제별로 5년차 계획을 배정해놓고 여기에 세정활동을 끼워 맞췄다며 실효성에 의문
 - 관세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각종 관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점(관세청이 과세이의신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2012년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함)
- 늘어나는 국가 채무와 이자 부담(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2013. 10. 16)
- 부채 규모가 많은 10대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3.9%로 설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구상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 10. 16) 등

(3)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확립 및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방지

- 잇달아 발생한 원전비리 문제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비리로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이 150명이 넘는다는, 비리 간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통해 재발방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7)

- 고객 5만 명에게 2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부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지난 수년 동안 동양그룹의 부실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지적 (2013. 10. 18,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사태를 키웠으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 및 대책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17)
- 잇따라 불거진 한수원의 비리 문제 : 온갖 비리로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문제(비리 관련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 촉구 필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수원 국감(2013. 10. 28)
- 국책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 연구원의 표절의심 사례가 84%로 나타나는 등 연구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 2013.10. 22)
-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조했고, 2013년에만 벌써 세 차례나 발생한 증권시장의 전산 사고에 대한 대책(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감, 2013. 10. 24)
-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직원이 7억여 원을 횡령하는 사건 등을 거론하며 내부 감독 강화도 주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4)
- 적십자사 정기감사에 의한 투명성(대한적십자사 자체 감사에서 직원들이 3년에 걸쳐 수 천여 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 **강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28)
- 예산액의 50% 이상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실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2013. 10. 28)
- 경영실적 악화로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1년 처음 적자로 전환됐는데, 해외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검토(2013. 10. 28. 조폐공사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
- 음주 운전 징계 등 법 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위 이상의 간부에서 비위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 (해경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 2013. 10. 28)
- 산업은행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9년 간 재직한 점과 동양 사태를 논의한

청와대 회의의 은폐 논란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감, 2013. 10. 28)

- 금품제공이나 입찰담합 비리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적 문제(조달청과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29)
- 방문진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카드사용 내역만 담겨 제출된 것을 두고,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 (미방위, 방문진 국정감사, 2013. 10. 29)
-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94%가 퇴직 이후 곧바로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했고 조달청은 이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식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기재위, 조달청 국정감사, 2013. 10. 29)

(4) 공사, 공공기관 등의 부채와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 한국거래소는 평균 11일의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500만 원 이상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4)
- 석유공사가 과거 1달러에 매매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부실 정유업체를 무려 1조원에 인수하는 등 성급한 계약 탓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국정감사, 2013. 10. 24)
-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되면 재무 건전성(BIS 등 재무구조)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2013. 10. 29.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 최근 5년 사이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직원들에게 1조5천억 원 넘게 성과급 지급 등 한전의 방만 경영(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5.)

(5) 인권, 문화권, 생존권, 방송의 공정성 문제

- 해직 언론인 문제-김재철 전 MBC사장 사퇴를 촉구해 해임됐던 언론인의 징계처분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해직 언론인의 복직문제 (미방위,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9)

-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 환경노동위원회, 2013. 10. 22)
- 홈쇼핑과 편의점, 보험 업계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5)

여당	야당
○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	○ 재벌 봐주기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

-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 계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2013. 10. 15)

여당	야당
○ 2017년까지 문화재정 2%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 문화재정 2% 공약은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수질악화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 대책(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2013. 10. 15)

(6) 먹거리와 생활, 안전대책

- 신고리 3,4호기는 부품시험 불합격을 받으면서 내년에도 전력수급 차질이 불가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7)
- 국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방사능의 국내 유입정도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도 원안위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7)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위축된 국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 2013. 10. 29)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와 관리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호(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 2013. 10. 15)

- 경전철의 타당성과 택시요금 인상 이후의 대책, 노량진·방화대교 참사 등에 대한 대책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8)
- 1인당 발매 한도는 10만 원이지만 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투표권을 발매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스포츠 토토의 불법행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10.21.)
- 운동선수 폭력대책(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10.21.)

(7) 개성공단 활성화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확대문제(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2013. 10. 28)
- 현재 입주기업들은 장기폐쇄로 인한 손실로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2013 10. 30.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8) 외교와 국가정체성 등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 어선들은 더 폭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처는 미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8)
- 일본의 도발에 대비한 독도해역의 철저한 경비 업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8)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 인터넷에 유포한 데 대해 적극적인 조치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 10월 21일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권고) 문제 (국회 교문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22)

여당	야당
교과서 8종 모두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며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와 함께 내일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

-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법리검토와 진행상황도 점검 (2013. 10. 1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 (2013. 10. 17.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목표가격²⁾ 추가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2013. 10. 29.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이 힘들다면 기존 예산을 재편성 하더라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함

(9) 건강보험 등 복지대책

-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인가, 만성질환에 대한 보험성 보장 확대가 먼저인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5)

여당	야당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고액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 시켜줄 것	○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저소득층의 주요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

- 보험금 장기체납과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5)

2)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결정되며 전국 쌀 평균가격과 목표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군납물품에 대한 위생 관리 점검과 군부대 내 마트와 휴양시설에 과도한 수의
현역병배치 문제(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2013. 10.
25)
-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군병원의 차별적인 의료혜택 적용(국군복지단과 국군의
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2013. 10. 25)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
감사, 2013. 10. 24)

여당	야당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의 재정적인 측면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 연금과 연계해야 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탈 퇴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리 고 있다

- 창조경제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중소·벤처기
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확인감사, 2013. 10. 31)
- 교육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처우 개선(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22)
- 정부의 기초연금안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4, 2013. 11. 1)

여당	야당
정부의 재정상황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최대 한 고려한 것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정 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공약파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 보다 수급액이 적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 등지급한다면 미리 가입한 젊은 세대가 손해 를 본다고 주장

- 밀양송전탑 등 정부의 갈등조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마련(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 2013. 10. 14)

(10)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선관위의 선거관리

- 서울시가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독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 2013. 10. 22)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지지부진한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사업,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책임 문제(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2013. 10. 22)
- 서울시의 부실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 간 재정 분담 문제(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2013. 10. 22)
- 사전 투표 제도와 인터넷 선거 운동 상시 허용 등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안전행정부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2013. 10. 21)

(11)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야권 후보를 비방하거나 여권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논란,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대선개입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정식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별 기용 수사라고 비판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7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2)
-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이 의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법제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판단 보류결정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2)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편향성’ 등 논란(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 2013. 10. 28) 및 자료제출 거부(나라사랑 교육 자료를 비롯해 관련 외부협찬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논란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즉각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자 정무위는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고발 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31)
-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공방(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2013. 10. 28)
-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연루된 통진당원들의 무죄 판결(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 2013. 10. 29)
-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정면충돌(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2013. 10. 21)
- 국정원 수사관련 ‘공소장’ 변경의 적절성 논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13. 10. 31)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IV.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감 진행상 특징

1. 23시 이후 자정을 넘기는 심야 국감 증가 (낮에는 파행 - 주파야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한낮에는 파행으로 시간을 허송하다가, 늦게 국감이 시작이 되어 자정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음.

일자	심야 국감 진행 위원회 — 책임감·사명감인지?
첫날 10월 14일 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파행으로 인해 새벽 1시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23시 38분까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23시 11분까지 ○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00시 06분까지
10월 15일 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24시 10분까지 ○ 김용판 증인의 증언거부논란이 있었던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23시 35분까지
10월 16일 수	○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 23시 16분까지
10월 17일 목	○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감은 00시 42분까지

일자	심야 국감 진행 위원회 — 책임감·사명감인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03분까지 ○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 국감은 23시 59분까지 ○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00시 32분까지
10월 18일 금	○ 감사위원 협박논란이 있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감은 23시 33분에 정회 후 자정 넘어 00시 17분까지 파행을 하고 있었으나 00시 25분경에 속행 1시 33분경에 산회함
10월 21일 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46분까지
10월 22일 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가 00시 15분까지
10월 28일 월	○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식회사 등 국정감사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파행하다가 간신히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00시 6분까지
10월 28일 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등 국정감사가 23시 27분까지
10월 31일 목	○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등 종합감사가 23시 40분까지
10월 31일 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감사가 11. 1. 2시 37분까지도 진행하다가 3시 18분까지

2. 피감기관 역대 최다(628개 기관)로 인한 구차한 ‘한 말씀 국감’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의 장도 심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겨우 ‘한 말씀 하세요’에 인사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음.

- 10월 17일 법무부 국감시 삼성떡값과 국정원 댓글 수사, 이석기 사건이 이슈였는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관련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 10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0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감사위원이면서 피감기관인 상태가 이슈화되었는데,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23시 36분에 2분 동안 신상관련 발언이 전부였음.

3. 세종시 국정감사는 부실, 국민 기대 못 미쳐

세종시의 교통문제, 치안문제, 주거문제 등 문제점이 안전행정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개최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다는 평가임.

세종시 국정감사는 감사시간 자체가 과천청사나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국정감사시간보다 부족했고, 언론 등의 취재부족으로 국정감사 보도도 매우 적었음.

- 1)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10.14)
- 2)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10.16)
- 3)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10.14,15)
- 4)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 5)
- 5)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14—15)

【세종시청사 국감의 문제점】

- 1) 일부 국감은 오후 8시를 전후해 서둘러 마무리했으며,
- 2)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이 조기에 철수
- 3) 모니터단과 국감 증인이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등 교통불편도 적지 않음 (15일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한 기업체 임원이 국감 장소를 국회로 착각해 결국 출석을 못한 일도 있었고, 14일 안행위 국감도 장소 때문에 모니터위원이 교체 이루어짐)
- 4) 화상회의시스템이 시험 설치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5)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이동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1박 2일 숙박국감 진행

4. 파행, 이유도 가지가지 -- 2013. 10. 17. 상임위파행의 날

상임위 이름은 바뀌었지만, 6년 연속 파행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년 연속 파행을 하였는데,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교학사 집필진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파행을 하다가 첫날부터 새벽 1시가 넘어서 산회를 하였음.

10월 17일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크고 작은 국정감사 정회가 있었는데, 파행성 정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이유
2013. 10. 14.	교육문화 체육관광	교육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
2013. 10. 15.	미래창조 과학방송통 신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이유
2013. 10. 15.	안전행정	경찰청	김용판 증인의 증인선서 거부(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에 대한 대책
2013. 10. 17.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전 통계청장 등의 증인채택 합의 파기 논란
2013. 10. 17.	안전행정	서울시경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질의 고조
2013. 10. 17.	산업통상자원	특허청 등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 (오전 내내 파행 후 오후 2시부터 감사시작)
2013. 10. 17.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새누리당 의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 발언 대응방안’ 을 담은 문건이 노출되면서 논란
2013. 10. 17.	환경노동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견회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증인 채택 논란
2013. 10. 17.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자격 논란
2013. 10. 18.	교육문화체육관광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기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감사위원(정진후 의원)에 대한 협박논란
2013. 10. 22	안전행정	서울시청	여야간 고성 설전(민주당 유대운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신경전)
2013. 10. 23	기획재정	수출입은행 등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
2013. 10. 25	안전행정 (2반)	충청북도	감사위원에 제공된 농산물 “쌈 채소” 관련
2013. 10. 28.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의 자료제출 거부
2013. 10. 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값 목표가격제 인상불가 방침
2013. 10. 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수협 등 국감	29일 국감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2013. 10. 31.	미래창조 방송통신	미래창조부 등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의견 충돌을 벌이며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부분파행 (통신비 원가공개)
2013. 10. 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등	교과서 논란 및 증인 불출석(부산교육감)-21시 이후에 국감 참석

5. 과다 ‘기업증인’ 에 의한 ‘기업국감’ 이라는 비난 자초

○ 대표적인 기업 증인 출석요구 국정감사 위원회로서는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었는데, 200여명에 가까운 기업증

인에 대해 지금까지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다만,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10월 17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심을 집중시켰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소홀이 더욱 큰 문제)

영동한 증인 (2013. 10. 15, 정무위원회)

허인철 이마트 대표 : 저는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기업형수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는 따로 있다

- 부실한 증인신문, 보여주기식 증인신청 :외국기업 CEO, 환노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으로 파행되기도 함.
- 국감중반이후에는 이석채 KT 사장의 불출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참고인)의 불출석 등이 논란이 되었음.

6.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반복 국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³⁾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질의가 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 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V. 여전한 국감장 풍경

1. 의원간,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및 호통국감

○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

민주당 은수미 의원,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했냐는 질문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10. 16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첫날에는 야당의 기업인 증인신청을 여당이 거부하자,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이 기업과 유착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여당의원들도 언성을 높이며 사과를 요구.

○ 10. 17일 부자감세 관련 논쟁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원들을 향해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공격했고,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

○ 정무위의 10월 14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이학영 의원은 “이러니까 ‘붕어 없는 붕어빵’, ‘총리 없는 총리실 국감’ 이라고 비웃는다”면서 “조선시대 수렴청정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음.

○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장 시절 기업 협찬 내용을 거론하며 ‘협찬 시장’이라고 표현

○ 10월 14일 미래창조위의 미래부 국감에선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호통.

2. 증인,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감사위원 협박 논란까지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0월 15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끝까지 선서를 거부함

○ 10. 17일 밤까지 국회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김현미 민주당의원의 참고인으로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충북조합장이 “옛 왕조 중에도 세금정책을 잘못 해 망한 사례가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망하

게 하려는 것이냐” 고 막말함

- 10월 14일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선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급여를 묻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개인신상 문제라 밝힐 수 없다” 고 답했고, 김 의원이 “세전은 얼마인가.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추가 질의를 하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는 답변으로 무성의 답변.
-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광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밝히면서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짐. (전날 정진후 의원은 이정숙 한국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개인인맥 관리용 화환을 300여차례 이상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10월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장이 ‘아 미치겠네’ 라는 막말을 하여 핀잔을 받음.
- 10월 29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음

3. 자료 제출 거부 및 부실 제출 등

- 10월 29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료제출 거부로 국감이 주간 국감이 중단되고 야간에 국감이 진행됨.
-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 및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속기록 제출을 거부함.
- 10월 31일 교문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10월4일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권고와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함.
- 10월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야당의 퇴장 요구를 받았는데, 야당이 제출을 요구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함.

4.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으나, 국감장 내에서도 피케팅

- 10월 31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사태와 위증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서 장관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함.
-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케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번 10. 18.과 10. 22.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피켓팅 시위가 있었음

5.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심야국정감사 등이 많이 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6. 여·야 ‘증인채택 논란’ 등에 의한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파행하였고,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파행을 하다가 정진후 감사위원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로 인한 파행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국감증인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대책문제로 파행함.

Ⅵ. 감사위원의 홈페이지 활용과 지방국감 실시현황

1. 국회의원(감사위원)의 홈페이지 활용도 :

--- 지난 해(49.5%)보다 약간 증가(58.24%)

(1)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자료를 의원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홈페이지가 없거나 연결이 안되는 의원은 297명 중 17

명 밖에 안되었고, 297명중 280명이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정감사 중 활동자료(질의자료나 보도자료)를 올려 놓고 있는 의원은 173명(58.24%)으로 조사되었음 (10월 23일 조사,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구성의; 의원명단에서 링크된 것과 네이버, daum 포털 등 의원명으로 검색함)

《2013년도 국정감사 홈페이지 보유 및 국정감사 자료 등 게시여부》

위원회	감사반장 (존칭생략)	현원	홈페이지 보유의원(명)	비율(%)	국감자료게시 의원(명)	국감자료게시 비율(%)
법제사법	박영선	16	14	87.5	11	68.75
정 무	김정훈	24	19	79.17	12	50.00
기획재정	강길부	26	25	96.15	18	50.00
미래창조과학기술 방송통신	한선교	24	22	91.67	14	58.33
교육문화체육 관광	신학용	30	27	90	17	56.67
외교통일	안홍준	24	22	91.67	10	45.45
국 방	유승민	16	15	93.75	10	62.5
안전행정	김태환	21	21	100	11	52.3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최규성	19	19	100	11	57.89
산업통상자원	강창일	30	29	96.67	18	60.00
보건복지	오제세	21	21	100	15	71.42
환경노동	신계륜	15	15	100	6	40.00
국토교통	주승용	31	31	100	20	64.51
계		297	280	94.27	173	58.24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국정감사 자료를 올려 놓은 건수는 4677건(2013. 11. 1. 오전 9시 30분 현재)이었음.

(3) 참고로 2012년도에는 다수의 초선의원이 입성한 제19대 국회에서 정보화시대 임에도 블로그나 홈페이지조차 없이 감사위원의 감사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상실하였고, 트위터 등 단편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제공하는 수준이었음

국정감사기간 중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관련 활동 자료(정책자료집이나 보도자료 등 의원실이 제작한 자료로 단순히 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기사는 제외하였음)를 공개한 의원은 2011년도에는 65.96%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49.49%로 의외로 적었으며, 제 19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원 소개란에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표시가 없는 의원도 상당수나 있었음(홈페이지 수정 또는 연결이 안되는 의원포함 45명으

로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중 15%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표시가 없어서 인터넷 강국의 국회의원이 라고는 믿을 수 없고, 제18대 국회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는 96%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음)

《국회(19-1)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조사》

위원회	세누리	민주통합	비교섭	계	감사자료 등재율	위원회	세누리	민주통합	비교섭	계	감사자료 등재율
의원수	149	128	22	299	(%)	의원수	149	128	22	299	(%)
법제사법위 (16/16)	4	5	0	9	56.25	농림수산식품 (19/19)	3	5	2	10	52.63
정부위(24/24)	2	8	1	11	45.83	지식경제위 (28/28)	5	9	1	15	53.67
기획재정위 (26/26)	7	5		12	46.15	보건복지위 (21/21)	6	5	1	12	57.14
외교통상통일 위 (26/26)	5	6	1	12	46.15	환경노동위 (15/15)	2	5	1	9	60.00
국방위 (17/17)	4	3		7	41.17	국토해양위 (31/31)	10	10	1	21	67.74
행정안전위 (22/22)	2	6	1	9	40.90	의원수	56	80	11	148	
교육과학기술 위 (24/24)	3	8		11	45.83	비율	37.58	62.5	50.0	49.49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30/30)	3	5	2	10	33.33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감축소는 긍정적이나, 국감내용 부실은 여전

지난 국정감사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횟수와 대상지방자치단체가 1개 기관에 1회 줄었고, 감사실시 위원회도 줄었음.

두 개 위원회가 중복하여 국정감사를 한 시·도는 4개로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였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바람직한 현상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도 출마여부 등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지방국정감사에서는 별건 대낮에 끝나고(오찬후 오후에는 경찰청 국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방국감 반대시위와 지방자치단체장예의 칭찬 국감 등이 많이 소개 되었음.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서울시경과 같은 날 받았기 때

문에 일찍 끝났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별도로 받았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국감) 현황〉

2013년도 국정감사			2012년도 국정감사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일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10.22	행정안전위	서울시	10.11
	경기도	10.24		제주특별자치도	10.15
	강원도	10.25		부산광역시	10.18
	충청북도	10.25		대전시	
	대구시	10.28		울산시	10.19
	전라남도	10.28		경기도	
	경상북도	10.29		인천시	10.22
	전라북도	10.29		광주시	
	경상남도	10.30			
	충청남도	10.3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경상북도	10.22	농림수산 식품	전라북도	10.16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0.18	환경노동	충청북도	10.22
	경기도	10.22		서울시	10.23
	전라남도	10.31	국토해양위	서울특별시	10.18
	인천광역시(취소)	10.31		충청남도	10.19
3개 위원회	15(14)	10일	4개 위원회	13개 시도	10일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반이 국정감사를 진행했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장에 대한 국정감사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임.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에이’ 발언 등 국감태도가 회자되기도 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